단체취급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하며, 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주계약의 보험계약자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이하 "대상단체"라 합니다)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 5인이상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다.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제1호의 대상단체 소속원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연생보험인 경우 주피보험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배우자형 및 가족형의 경우 주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조(보험요율의 적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①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 하였을 때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